

<간이투자설명서>

(2018.07.03)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BG775)

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1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설정일 기준)으로 전환(모자형 전환 등)하며,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임의해지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한BNPP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설정일 기준)으로 전환(합병, 모자형 전환 등)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형(혼합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신한 비엔피 파리바 자산운용(주)(02-767-5777)		
모집(판매)기간	<u>2016년 9월 5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 까지</u>	모집(매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효력발생일	2018년 07월 06일	준속 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1	투자자격 제한없음	<u>납입금액의 0.80% 이내</u>	-	<u>없음</u>

종류(Class)	가입자격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
A-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납입금액의 0.40% 이내	-	없음
C1	투자자격 제한없음	-	-	
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On-line)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	-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	3년 미만 판매시 판매금액의 0.15%이내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	-	

구분		보수 (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기타	합성총보수.비용 (<u>피투자집합투자기구</u> <u>보수 포함</u>)
종류	A1	<u>0.360</u>	<u>0.500</u>	<u>0.025</u>	<u>0.015</u>	<u>0.0013</u>	<u>0.9013</u>
	A-e	<u>0.360</u>	<u>0.250</u>	<u>0.025</u>	<u>0.015</u>	-	<u>0.650</u>
	C1	<u>0.360</u>	<u>1.200</u>	<u>0.025</u>	<u>0.015</u>	<u>0.0023</u>	<u>1.6023</u>
	C-e	<u>0.360</u>	<u>0.500</u>	<u>0.025</u>	<u>0.015</u>	-	<u>0.900</u>
	C-p	<u>0.360</u>	<u>0.900</u>	<u>0.025</u>	<u>0.015</u>	<u>0.0006</u>	<u>1.3006</u>
	S	<u>0.360</u>	<u>0.250</u>	<u>0.025</u>	<u>0.015</u>	-	<u>0.650</u>
	S-P	<u>0.360</u>	<u>0.230</u>	<u>0.025</u>	<u>0.015</u>	-	<u>0.630</u>

※ 주석사항

- (주4)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5)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간 : 2016.09.13 ~ 2017.09.12] 설정전인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으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이 설정된 후에는 발생된 비용을 기재합니다.
- (주6) 합성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7)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피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은 합성 총보수.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주8)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1) 15시30분 이전: 제2영업일 (D+1)의 기준가격을 적용 (2) 15시30분 경과 후: 제3영업일 (D+2)의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방법	(1) 15시30분 이전: 제3영업일(D+2)의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D+3)에 지급 (2) 15시30분 경과 후: 제4영업일(D+3)의 기준가격으로 제5영업일(D+4)에 지급
기준가격	(1)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	(2)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shbnppam.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I.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 등에 투자하여 해당 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식운용부분에서 개별 주식 종목에 대한 목표 수익률 개념과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현재 성과 비교를 위한 적합한 비교지수가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특정한 비교지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투자전략	투자비중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이 투자신탁은 가치주, 배당주, 공모주 등 국내 주식 및 국채, 통화안정증권, 우량 회사채 등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50% 이하
신한BNPP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채, 통화안정증권, 우량 회사채 등의 채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공모주 등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50% 이하

3. 운용전문인력 (2018.06.30 현재)

(1)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일임계약제외)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홍윤표	1975	책임운용역	8개	4,293억원
김재정	1973	책임운용역	44개	27,737억원
유영권	1977	부책임운용역	4개	959억원
서보민	1984	부책임운용역	39개	11,656억원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투자운용본부장, 주식운용3팀, 채권운용2팀에서 담당하며, 상기 운용역이 각각 책임운용역 및 부책임운용역입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채권투자운용본부장, 주식운용3팀, 채권운용2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두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한BNPP공모주&밴드트레이딩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일임계약제외)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홍윤표	1975	책임운용역	8개	4,293억원
김재정	1973	책임운용역	44개	27,737억원
유영권	1977	부책임운용역	4개	959억원
서보민	1984	부책임운용역	39개	11,656억원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투자운용본부장, 채권운용2팀, 주식운용3팀에서 담당하며, 상기 운용역이 각각 책임운용역 및 부책임운용역입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채권투자운용본부장, 채권운용2팀, 주식운용3팀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두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한BNPP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생년	직위	운용현황(일임계약제외)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김재정	1973	책임운용역	44개	27,737억원
정성한	1976	책임운용역	11개	2,329억원
서보민	1984	부책임운용역	39개	11,656억원
이유라	1986	부책임운용역	1개	7억원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투자운용본부장, 채권운용2팀, 액티브주식운용실에서 담당하며, 상기 운용역이 각각 책임운용역 및 부책임운용역입니다. 상기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채권투자운용본부장, 채권운용2팀, 액티브주식운용실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위의 수치 산정 시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의 경우 모두자신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2018.06.30 현재/단위:%]

구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종류 A1	2016.09.13	0.72	-	-	-	-
종류 A-e	2016.09.13	0.98	-	-	-	-

종류 C1	2016.09.13	0.00	-	-	-	-
종류 C2	2017.09.13	-	-	-	-	-
종류 C-e	2016.09.13	0.73	-	-	-	-
종류 C-i	2017.03.10	-1.68	-	-	-	-
종류 C-p	2016.10.25	0.32	-	-	-	-
종류 S	2016.11.08	1.05	-	-	-	-
종류 S-P	2017.01.31	1.23	-	-	-	-

(주1) 비교지수 : 없음

* 종류A1 ,종류A-e ,종류C1 ,종류C-e ,종류C-p ,종류S ,종류S-P 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구분	주요 내용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의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장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 공모주" 라 함)은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관리

(1) 위험관리

증권(일괄)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2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에 기재된 위험관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6개의 위험등급 중 3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의 내부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수익자에 대한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 등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및 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2)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이 투자신탁은 연금저축계좌 불입 금액의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1) 보수인하 종류 수익증권 간의 전환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이하 "최초매수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청구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 합니다. 상기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이 투자신탁의 재무정보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shbnpp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 (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bnppam.com)
-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hbnppam.com)